

자주 묻는 질문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오존 배출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규

최종 수정일 2014년 6월 3일

다음 질문과 답변은 캘리포니아주 공기청정장치 법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이 해당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제조업자들이 자사의 공기청정기모형을 해당 법규에 맞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기의 정보는 법규의 원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기정청장치 제조업자 및 그 외 관련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웹

페이지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manufacturers.htm 를 방문하여 '최종법규명령(Final Regulation Order) 및 기타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공기청정장치 법규에 대한 최신 개정판은 <http://arb.ca.gov/regact/2009/iacd09/iacd09.ht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에 제공된 정보 및 최종 법규명령, 필수 시험기준 및 관련 문서 사이에서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웹사이트의 공식 문서를 우선시 합니다. 하기아래의 정보 또는 본 문서에 제시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의문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aircleaners@arb.ca.gov 로 연락하시거나, mgabor@arb.ca.gov 또는 (916) 323-2190 으로 Michael Gabor 에게 문의하거나 본 문서 마지막의 연락처 목록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1. 본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 법규는 가정, 사업장, 학교 등과 같이 점유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을 가진 의료 및 비의료용 장치를 포함한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제조, 판매, 공급, 판매제의 또는 상업용으로 소개하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영어로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광고되는 공기정청장치가 포함됩니다.

2. 본 법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되었으나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공기청정장치에도 적용이 됩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되는 경우 본 규정은 제 94800 조에 따라 해당 장치에도 적용되지만 해당 장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면 제 94802 조에 명시된 표준은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시험 또는 인증을 취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못한 장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상거래 및 판매를 위해 제공된다면 이는 법규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인 공기정청장치의 경우 유통 지역에 따라 후속 판매를 위해 캘리포니아주로 되돌아올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장치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인증을 획득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본 법규의 라벨 표시 규정은 해당 장치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제 94806 조 [e]항). 인터넷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 또는 판매되지만 시험 및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산업용 장치는 해당 장치가 판매를 위해 광고 또는 게시되는 주요 웹페이지, 카탈로그 페이지 및 관련 자료상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로 배송 불가.”

3. 무엇이 “실내 공기청정장치”로 간주됩니까?

“실내 공기청정장치”란 밀폐된 공간 내부의 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알레르기 항원, 미생물(예: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및 기타 미생물), 먼지, 입자, 연기, 연무, 가스 또는 증기, 냄새 나는 화학물질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기 중 부유 오염물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기능을 갖춘 에너지 소비 제품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크기의 방안이나 주택 또는 건물 전체 내부 또는 자동차 내부에서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여하한 다양한 크기의 휴대용 장치 및 벽, 천장, 기동 또는 기타 다른 실내 표면에 부착되도록 설계된 개별 장치 등이 해당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계식 공기청정기(예:주름 필터만 포함한 장치), 이온발생기, 전기집진기, 광촉매 산화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클러스터 장치, 코로나 방전 또는 UV(자외선) 오존 발생기 및 기타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구성요소를 포함하나 주 목적이 공기 청정 작용이 아닌 제품 또한 실내 공기청정장치로 간주됩니다.

4. 준수일자는 언제이며 이때까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실내 공기청정장치에서 생산되는 오존의 양을 제한하기 위한 ARB 공기정청장치 법규는 2008년 10월 18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9일 본 법규에 대한 여러 수정안이 주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2009년 10월 18일 통지 마감일
- 2010년 10월 18일 시험테스트 및 인증 마감일
- 2011년 10월 18일 라벨 표시 마감일(부착식 라벨은 2012년 10월 1일까지만 허용)

통지 마감일은 2009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에게 본 법규에 대하여 통지하고 최종 확정된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며 ARB에 본 법규의 제 94807 조에 따른 의무가 지켜졌음을 알리는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제조업자는 본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ARB의 Susan Lum(본 문서 마지막의 연락처 참조)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요건을 즉시

완수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manufacturers.htm 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의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공기청정장치 모델은 먼저 본 법규에 따라 시험 및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공기청정장치도 포함합니다. 특히 이 날짜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위원회(ARB)로부터 해당 장치의 오존 방출 농도가 0.050ppm 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인증이 없는 한 어떠한 사람 또는 사업체도 점유 공간 내에서 사용되거나 그러한 용도의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 판매, 공급, 판매 제의 또는 상업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금합니다.

2011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모든 포장에는 인증을 나타내는 필수 라벨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2012년 10월 1일까지 제품 포장 위에 인쇄 형식이 아닌 접착식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장치는 또한 요건에 맞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법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앞으로도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manufacturers.htm 을 참조해 주십시오.

5. 본 법규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용으로만 제조, 유통 및 사용(질문 6 참조)되는 공기청정기 또는 “인덕트(in-duct)” 시스템 내 완전히 통합된 형식의 공기청정기(질문 7 참조)는 본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는 산업용품 직판점 또는 업체를 통해서만 유통되어야 하며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라벨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용으로만 사용할 것. 오존 방출 제품으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음.”

6. “산업용” 또는 “산업 용도”란 무엇을 뜻합니까?

“산업용” 또는 “산업 용도”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오존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A) 산업용 공장, 수처리 시설, 지방 자치체의 수도 시설 또는 유사 시설 및 수영장 및 스파용 용수 정화
- (B) 농업용 처리 시설, 냉장 운송 트럭 또는 관련 시설 내 농산물의 미생물 박멸
- (C) 전자제품, 의약, 생명공학 및 화학 산업 내 화학적 산화 및 소독
- (D) 펄프 및 제지 산업 내 표백 및 기타 처리 목적
- (E) 산업용 연도기체(**stack gases**) 또는 폐수 처리 시설의 악취 제거
- (F) 호텔 산업 내 악취 및 연기 제거. 단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 (G) 곰팡이 제거. 단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 (H) 화재 및 매연 피해 복구. 단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 (I) 자동차 리컨디셔닝 및 내/외장 관리 산업 내 악취 관리. 단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7. “인 덕트(in-duct)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인덕트 시스템”이란 중앙 난방, 냉방 또는 환기 시스템의 일부로만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설계, 유통 및 사용되는 공기청정장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공기의 흐름 또는 연소 및 때때로 전력을 위해 HVAC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주로 덕트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흡입구 또는 급기구에 위치한 시스템은 인덕트 면제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의 제조업자는 ARB 를 통해 해당 장치의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제조업자는 ARB 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는 전문가협회 또는 인증기관이 해당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업자 및 시험기관의 서명과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및 인증

9.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가 있습니까?

아니오,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주정부는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신청서 및 작성 안내서는 ARB 웹사이트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certification.htm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은 또한 중국어 및 한국어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11. 인증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단계. ARB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구합니다(질문 10 참조).
- 2 단계. 이메일(aircleaners@arb.ca.gov)을 통해 ARB 로부터 신청 번호를 교부받습니다. 신청서는 시험 및 인증 대상 모델 별 각 1 부씩 필요합니다. 신청서 번호는 실제 시험 대상이 아닌 동일 모델군의 다른 모델(질문 13 참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단계. 자세한 안내사항은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instructions-03.pdf 를 확인해 주십시오.
- 4 단계. 신청서 1 페이지에서 3 페이지까지 (및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정보가 있을 경우 6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 5 단계. 공인 시험기관이 시험을 수행하고 해당 시 양식의 4 및 5 페이지를 작성합니다(질문 15 참조).

6 단계. 제 37 조(현 제 40 조, 질문 12 참조)에 따라 오존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치의 경우, 오존 시험을 수행했던 국가공인시험소(NRTL)가 아닌 다른 NRTL 에서 전기 안전 시험을 수행하였을 경우, 후자의 시설은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supplemental.pdf 에서 추가양식을 입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7 단계. 작성한 신청서, 보충양식(해당 시) 및 신청서 안내사항에 규정된 대로 시험소의 온라인 디렉토리 목록을 포함한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필수 서명, 시험 결과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어떤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까?

시험 항목은 인증 대상 공기청정장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a) 모든 전자식 공기청정기(예: 전기집진기[ESP], 이온발생기, 광촉매 산화장치 및 하기의 “기계식 여과 전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모든 공기청정기)는 미국 국립 표준 연구원/보험업자 안전시험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Underwriters Laboratories, Inc.)(ANSI/UL) 2007년 12월 21일 (또는 이후)판 [표준 제 867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 표준에는 전기 안전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표준 제 37 조는 필수 오존 배출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UL 에서 개정하여 현재 제 40 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 UL 은 또한 제 37 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표준 제 867 호에 대한 여섯 가지 ‘인증 요건 결정(Certification Requirement Decisions, CRD)’을 내렸습니다. 해당 시험소는 시험을 수행할 때 이러한 결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 CRD 는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manufacturers.ht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스크롤을 내려 “공기청정기 시험 및 인증 안내사항(Instructions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Air Cleaners)”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대안으로 귀하는 새로운 제 40 조 법규에 대한 모든 CRD 를 통합한 최신 개정본인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5 판을 UL(www.comm-2000.com)을 통해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b) “기계식 여과 전용” 장치는 2007년 9월 27일판 ANSI/UL 표준 제 507 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오존 배출 시험을 포함하지 않는 전기 안전 표준입니다. “기계식 여과 전용” 공기청정기란 비전자식 기술인 물리적 장벽을 사용한 여과 방식을 통해서만 공기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기를 여과 매체 사이로 강제로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과 매체 구성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활성탄, 종이, 발포제(foam), 합성물, 세라믹 또는 천연 섬유 등의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UV(자외선) 전구를 포함한 기계식 여과 장치는 표준 제 507 호의 전기 안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표준 제 867 호의 제 37 조(현 제 40 조)의 오존

방출 시험에도 통과해야 합니다.

c) 주 목적 이외에 공기청정요소를 포함한 장치인 **다목적 장치**는 주요 목적에 가장 적합한 ANSI/UL 표준에 따른 전기 안전성 시험을 거치도록 하며, 필요 시, 표준 제 867 호의 제 37 조(현 제 40 조)에 따른 오존 시험을 거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온화 공기청정 기능을 포함한 휴대형 에어컨은 ANSI/UL 표준 제 484 호(실내 에어컨)에 따른 전기 안전성 시험을, 표준 제 867 호 제 37 조(현 제 40 조)에 따른 오존 방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본 법규에 현재 명시되어 있는 다목적 장치에 대한 기타 다른 전기 안전성 표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i) ANSI/UL 표준 제 1278 호(휴대형 및 벽 또는 천정 부착형 실내용 전자 히터)
- ii) ANSI/UL 표준 제 1017 호(진공 청소기, 송풍형 청소기 및 가정용 바닥 가공기) 및
- iii) ANSI/UL 표준 제 1993 호(안정기 내장형 램프 및 램프 어댑터)

상기 4 개의 표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제 94801 조 (a)(3c)항, 제 94801 조 (a)(3e)항, 제 94801 조 (a)(3d)항 및 제 94801 조 (a)(3f)항을 참조하십시오.

공기청정기가 포함되어 있는 에어컨과 같은 다목적 장치의 제조업자는 해당 공기 청정 기능 또는 다목적 장치를 광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ARB의 시험 및 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해당 시험 시설은 UL 표준 제 867 호에 따른 해당 기기를 시험할 다른 적절한 방법을 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3. 모든 모델이 시험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본 법규에서 명시한 대로 한 모델군에 속한 실내 공기청정장치 중 단 하나의 대표 모델만 해당 시험 방법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모델군(model group)은 “모델 패밀리(model family)”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4. “모델군”이란 무엇입니까? “모델 패밀리(Model family)”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모델군”이란 설계, 작동 기능, 기기 출력 및 성능 특성 등이 같으며 제조업자도 같은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의미합니다. 같은 모델군에 속해도 서로 다른 상표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색상, 리모컨, On/Off 스위치 유형 또는 오존과 무관한 그 밖의 미관적 특성과 같이 장식적인 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기기들은 동일한 모델군에 속하게 됩니다. 다른 출력 수준 또는 전원, 다른 외장재, 다른 유형의 필터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모델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모델 패밀리(Model family)”는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본 규정의 “모델군”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 라인을 주의깊게 살펴본 후 자사의 모델이 하나 이상의 모델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ARB에 연락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15. 시험은 누가 실시합니까?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시험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국가공인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로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험소는 ANSI/UL 표준 제 867 호, ANSI/UL 표준 제 507 호 또는 다목적 장치에 대한 기타 ANSI/UL 표준 중 해당되는 법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OSH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OSHA 보충 프로그램(OSHA Supplemental Programs) 2, 3, 4, 5, 6 및 10을 통해 NRTL과 계약을 맺은 기타 시험소에서도 전자 안전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충 프로그램 10은 또한 Satellite Notification and Acceptance Program 또는 SNAP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규에서 요구하는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37 조(현재 제 40 조) 오존 시험은 NRTL 또는 ANSI/UL 표준 제 867 호 제 37 조(현재 제 40 조)에서 규정한 오존 방출 시험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을 위한 초기 ARB 감사 및 연례 심사를 통과한 보충 프로그램 2 시험소를 활용하는 NRTL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UL(Air Quality Sciences 시험소 사용), Intertek Testing Services(뉴욕 코틀랜드 시설만 해당), 및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CSA, 또한 Air Quality Sciences 시설 사용)만이 본 시험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인정되는 시험소 관련 연락처 정보는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certification.htm를 방문해 주십시오.

16. 같은 국가공인시험소(NRTL)에서 ANSI/UL 표준 제 867 호에서 요구하는 전기 안전성 시험과 제 37 조(현재 제 40 조) 오존 시험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 전기 안전성과 오존 시험을 각각 제 94805 조 [d]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서로 다른 NRTL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증받은 장치는 담당 시험소의 표식을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해당 표식이 없는 제품은 동일한 시험소에서 모든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경우, 전기 안전성 및 오존 시험은 제조업자의 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다른 NRTL을 통해 받는 것이 가능하나 제 37 조(제 40 조) 오존 시험은 ARB의 검토, 감사 및 인증을 받은 NRTL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NRTL은 다른 NRTL의 시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반드시 한 시험소가 다른 시험소 데이터를 수용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의 신청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충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질문 11의 6단계 참조).

17. “기계식 여과전용” 공기청정장치는 누가 검증합니까?

인증 신청서 안내사항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certification.htm에 명시된 대로 ANSI/UL 제 507 호에 따른 시험소 인증 및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 설계 사양서 및 기타 문서를 토대로 하여,

ARB가 해당 공기청정장치가 오존 방출 시험 면제 대상인 기계식 여과전용 공기청정장치인지를 검증합니다.

18. 당사의 “기계식 여과 전용” 모델이 ANSI/UL 표준 제 507 호에 따라 이미 시험을 받았다면 재시험을 거쳐야 하나요?

이전 시험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8년 10월 18일 이전에 시험을 거친 “기계식 여과 전용” 장치의 경우, 새로운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자는 해당 장치를 시험한 시험소가 신청서의 섹션 E 및 F를 기입하고 섹션 F에 서명하도록 하거나 (이 방법이 선호됨), 또는 해당 모델이 ANSI/UL 표준 제 507 호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시험을 수행했을 당시 시험소로부터 받은 서명이 포함된 서신 또는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허용되는 문서의 일부 예시는 UL 인가 통지서(UL Notice of Authorization, NOA), UL 준수 인증서(UL Certificate of Compliance, C of C), UL 준수 평가 인증서(UL Certificate of Conformity Assessment, C of A), Intertek 표시 인가(Intertek Authorization to Mark, ATM) 및 NRTL 리스팅 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상기 문서 중 하나 뿐 아니라 해당 장치에 대한 시험소의 현재 온라인 목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시험소는 반드시 섹션 E 및 F를 기입하고 신청서 5 페이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표준 제 507 호의 요건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함을 유념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는 해당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시험소의 웹사이트 디렉토리 상의 최신 목록을 통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18일 이후에 시험을 받은 기계식 모델의 경우, 2007년 9월 27일 공표된 ANSI/UL 표준 제 507 호 제 9 판에 따라 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은 NRTL 또는 질문 15에 명시된 NRTL 계약 시설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험소는 반드시 신청서 양식의 적절한 섹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식 여과 전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certification.htm의 인증 신청서 안내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라벨 표시 및 마크 표시 요건

19. 특정 라벨 표시 요건은 무엇입니까?

본 법규에서 “라벨”이 제품 포장의 일부를 차지하되 무관한 내용과 분리되어 있으며, 읽기 쉬운 형식으로 의무 진술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벨은 제품 포장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10월 18일 이전에 인증을 획득한 공기청정기 모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포장에 필수 라벨을 포함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후부터는 포장에 반드시 라벨을 포함시켜야 하나 2012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장치의 경우 부착식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0월 1일 이후부터 모든 포장에는 패키지 상에 인쇄된 필수 라벨을 게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의료용 장치의 경우, 본 법규의 제 94806 조에 따라 라벨은 최소 가로 1인치세로 2인치 크기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공기청정기는 연방정부의 오존 방출 한계를 준수합니다. ARB 인증 필.” 또한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되 대문자의 높이는 최소 3mm가 되어야 합니다. 본 라벨은

패키지 바닥면이 아닌 윗면 또는 측면에 붙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장치 내 공기 청정기를 포함한 휴대용 에어컨과 같은 다목적 장치의 경우 가장 적절한 라벨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장치 내에 포함된 공기청정기는 연방정부의 오존 방출 한계를 준수합니다. **ARB 인증 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ARB** 를 통해 자사 장치에 적절한 라벨에 관하여 문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용 장치의 경우, 라벨은 연방법규집, 표제 21, 제 801.415 조를 포함한 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http://edocket.access.gpo.gov/cfr_2004/aprqtr/pdf/21cfr801.415.pdf 참조). 이 라벨에도 “**ARB 인증 필**”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0. 인터넷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판매되는 비인증 제품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에게 배송 가능합니까? 특수 라벨이 필요합니까?

- a) 산업용 면제 대상이 아닌 제품: 2010년 10월 18일 이후, **ARB**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배송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 또는 판매되지만 **ARB** 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비산업용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해당 장치가 판매를 위해 광고 또는 게시되는 주요 웹페이지, 카탈로그 페이지 및 관련 자료상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로 배송 불가.” 이러한 장치가 캘리포니아주로 배송되거나 판매된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질문 31 참조).
- b) 본 법규의 정의에 따라 산업용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 (본 법규에 따른) 산업용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본 법규 제 94803 조에 명시된 메시지를 사용한 다음과 같은 라벨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용으로만 사용할 것. 오존 방출 제품으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음.”

21. 안전성 인증 및 리스팅 마크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ANSI/UL** 표준 제 867 호 및 제 507 호에 대한 안전성 인증 또는 리스팅 마크는 인증을 획득한 각 공기청정기상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 및 비의료용을 포함한 모든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이러한 정보를 장치 상에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manufacturers.htm 에서 최종 법규 명령(Final Regulation Order)의 제 94806 조 (d)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2. 당사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 여부는 언제 통보 받을 수 있습니까?

ARB 에서 인증 신청서를 받은 후 검토를 받을 것임을 안내하거나 또는 미비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서면 통지서를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내드립니다. 보완할 내용없이 완전하게 작성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시한은 집행관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ARB는 첫 30일 이내에 신청서 접수 및 승인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하나의 서신을 통해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으며 해당 장치가 인증을 받았음을 모두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자는 ARB의 정상적인 검토 절차는 최대 60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여 필요한 승인일자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체 계약, 임박한 출하일 및 관련 시한을 맞추기 위하여 급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ARB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신청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제조업자는 신청서 제출 시 표지상에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며 ARB 직원은 제조업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통업자에 대한 통지

23. 제조업자로서 당사의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에게 본 법규에 대해 반드시 통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마감일은 2009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이 마감시한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 판매, 공급, 판매제의 또는 상업용으로 도입되는 실내 공기청정장치의 제조업자는 그 회상의 알려진 모든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에게 ARB가 채택한 최종 법규의 정확하고 진실된 사본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아직 준수하지 않은 제조업자는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하기 질문 25에 대한 답변과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24. 유통업자와 최종 사용자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본 법규에서 “유통업자”는 “재판매 또는 상업적 유통을 위하여 실내 공기청정장치를 구입하거나 공급받은 사람(제 94801 조 [a][10]항)”을 의미합니다. 유통업자가 단지 최종 사용자로 시작하였을지라도, 유통업자이거나 또는 유통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들이 여러 건을 주문하였는지, 한번에 여러 장치를 주문하였는지, 사업자면허 또는 상업용 ID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기관과 분명한 상업적인 관계를 맺고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해당 장치를 재판매할 것처럼 보일 경우, 제조업자의 통지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5. 본 법규에 대하여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본 법규에 대한 안내는 서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법규의 제 94807 조에 명시된 대로, 우편 통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 서류로 ARB에 제출 가능한 문서는 발송 자료의 출력본 및 각 수신인에 대한 완전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관련 우편물 수신자 목록을 포함합니다. 이메일 통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해당 이메일 사본 및 각 이메일 수신자에 대한 완전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표제 17, 제 1 장, 4 절(기록의 공개), 제 91000 조에 명시된 대로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 94807 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최초 통지서를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발송한 이후 알게된 새로운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의 경우, 제조업자는 유사한 통지서를 이들에게 제공하고 연락처 정보를 ARB 에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에 대한 차후 통지의 경우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통업자,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와 사업관계를 시작한 후 해당 주체를 대상으로 공기청정장치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는 것이 제조업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통지에 대한 문서는 분기별로 ARB 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분기에 새로운 유통업자,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추가되지 않은 경우, ARB 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서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과 제조업자가 유통업자 및 판매자에게 안내시 사용할 수 있는 견본 서식은 ARB 의 웹사이트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manufacturers.ht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가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지 않거나 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제조업자의 의무는 무엇이며 유통업자/판매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조업자 그리고 유통업자, 판매자 및 소매업자는 본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파악된 모든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판매자에 대해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정보를 ARB 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ARB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는 본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통지 법규는 유통 및 소매 체인내 모든 당사자들이 해당 법규 및 2010년 10월 18일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인증 장치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안내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가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할 경우, 본 법규는 연락처 정보를 요청 시 기밀로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공기청정기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어 유통 센터로 발송되었으며 제조업자는 유통센터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경우, ARB 에 제출하기 위해 어떠한 유통 목록 또는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제조업자는 유통센터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구매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이러한 구매자가 해당 공기청정기를 다시 판매 또는 유통시키지 않는 이상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공기청정기의 구매가 개인용인지 재판매용인지 명시할 것을 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제조업자는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 모든 유통업자, 판매자 및 소매업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8. 제조업자가 특정 정보(예를 들면 유통업자의 연락처 정보)를 기밀로 간주하도록 하는 ARB의 법규로 인해 ARB가 유통업자에게 서신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ARB는 필요시 유통업자, 판매자 및 소매업자에게 서신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에게 보내진 서신물은 대중이 요청할 수 있는 별개의 기록이 되나 기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통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는 제거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29. 당사의 제품(들)이 인증을 받고 나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이를 알릴 수 있습니까?

소비자는 제품 라벨을 통해 또는 ARB의 웹사이트 www.arb.ca.gov/research/indoor/aircleaners/certified.htm 상의 목록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규의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실내 공기청정장치는 인증 요건을 완수 후 2011년 10월 18일 이전에 제품 패키지 상에 오존 방출 인증 라벨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6의 정의에 부합하는 “산업용” 장치는 질문 20에 대한 답변 (b)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록 관리

30. 제품 또는 인증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판매자 및 시험소는 본 법규에 대한 관련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기록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공, 판매제의, 상업용으로 소개 또는 판매용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유통업자 안내자료, 생산, 품질관리, 영업 또는 시험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ARB의 요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법규집 표제 17, 제 1장, 4절(기록의 공개), 제 91000조에 명시된 대로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31. 비준수 시 처벌을 받습니까?

ARB는 2010년 10월 18일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시험을 거치고 오존 방출량이 50 ppb 이하임을 인증 받아야하며 이러한 장치가 또한 공기 청정기 법규의 다른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법규집, 표제 17, 제 94800-94810 조). 본 법규의 집행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존 방출량을 통제하고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ARB는 인터넷 검색, 제조업자의 제출물 검토,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친 소매 대리점에 대한 무작위 검사 수행, 판매 제안된 공기청정기 구매(소매대리점, 직판 또는 인터넷을 통한), 등과 같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라벨

표시 요건에 대한 준수여부를 검사할 것이며 구매된 공기청정기는 본 법규(ANSI/UL 표준 제 867 호)에 명시된 오존 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시험을 거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 및 기타 판매자에게 본 공기청정기 법규에 대해 알리고자 한 제조업자의 노력을 문서화한 기록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조사 후, 공기청정기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ARB 는 제조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규의 조항을 위반할 시, 위반사항에 대한 통지서가 발행되고, 인증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인증이 취소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위반사항에 연루되거나 영향을 받은 제품을 회수하여 이 조항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한 기타 벌금이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본 법규에 따라 발행된 위반 통지서를 집행하기 위하여 ARB 는 적절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법(공중보건법(Health and Safety Code [HSC]) 제 42402 조 이하)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예를 들면 하루에 \$1000, 최대 \$1,00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적격한 기소당국에 회부되어 공중보건법 제 42400 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3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연락하면 됩니까?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시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ircleaners@arb.ca.gov 또는 Michael Gabor((916) 323-2190, 또는 mgabor@arb.ca.gov)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usan Lum((916) 323-5043, 또는 slum@arb.ca.gov)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가능 제품에 대한 법규 및 문의사항은 Peggy Jenkins((916) 323-1504, 또는 mjenkins@arb.ca.gov)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 또는 ARB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을 출력 또는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Susan Lum((916) 323-5043, 또는 slum@arb.ca.gov)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